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2년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전월 대비 0.8% 증가

○ 2012년 12월 생산은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광공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15.4%), 자동차(-6.2%), 비금속광물(-12.6%)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7.1%), 영상음향통신(9.8%), 화학제품(3.4%)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 증가(전월대비 1.4%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3.1%), 협회·수리·개인(-1.0%), 교육서비스업(-0.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하수·폐기물처리(5.2%), 보건·사회복지(4.6%), 부동산·임대(2.4%), 금융·보험(1.7%)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 증가(전월대비 0.1% 증가)함.

○ 2012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투자는 6.3%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0.3%)는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9.8%)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5% 증가(전월대비 1.1% 감소)함.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정밀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6.3% 감소(전월대비 9.9%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전월대비 5.8% 증가)하였

고, 건설수주(경상)는 사무실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주택·철도·기계설치·발전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2.5% 감소함.

-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광공업 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12월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을 제외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9% 상승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함.

◆ 2012년 생산과 소비는 전년대비 각각 1.2%, 1.8% 증가한 반면 투자는 전년대비 1.1% 감소

- 2012년 생산은 제조업(1.8%), 서비스업(1.7%)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소비는 내구재(10.8%)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함.

◆ 201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생활물가지수 0.8% 상승)

- 201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2010=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6%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하여 2012년 11월의 1.6% 상승 이후 3개월 연속 1%대 상승을 기록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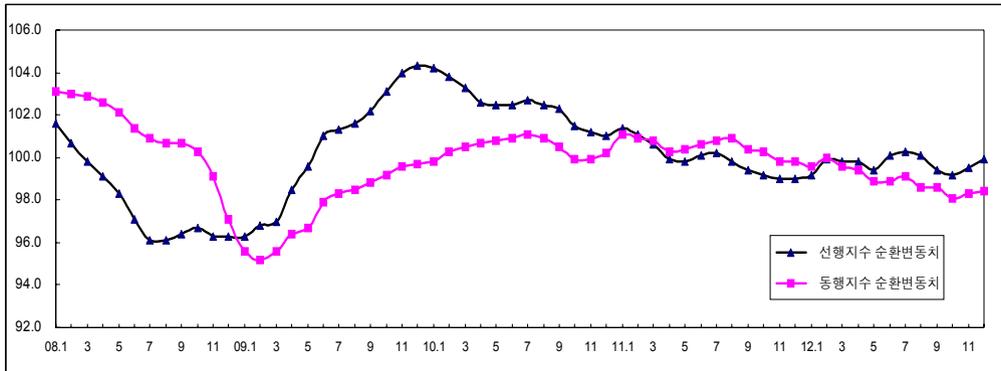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1/4	2/4	3/4	4/4p	연간p	12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2.9	3.8	1.5	0.4	1.1	1.7	0.8(1.0)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2.9	4.2	1.5	0.3	1.2	1.8	1.2(1.4)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2.4	3.3	1.5	0.4	-0.1	1.3	-0.5(2.4)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7	0.3	-1.3	-1.5	-1.9	-1.1	-2.9(2.6)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4.6	6.7	4.9	2.3	1.8	3.9	2.0(2.2)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1.6	2.5	1.7	1.6	1.3	1.7	1.0(0.1)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0	2.0	1.0	1.7	2.5	1.8	1.5(-1.1)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1.0	9.4	-0.4	-7.1	-5.6	-1.1	-6.3(9.9)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3.4	3.0	2.4	1.6	1.7	2.2	1.5(0.6)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3년 1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05 = 100)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둔화

- 2013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9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7천 명(1.3%)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666천 명으로 180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성은 10,236천 명으로 136천 명(1.3%) 증가하였음.
- 2013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성(71.6%)은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여성(47.8%)은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임 (그림 4 좌측 참조).
- 2013년 1월 중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남성의 고용률은 69.1%, 여성의 고용률은 46.3%로 둘 다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그림 4 우측 참조).
- 2013년 1월 중 취업자는 24,0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2천 명(1.4%)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1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3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91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9천 명(1.5%)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3년 1월 중 실업자는 8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0.7%)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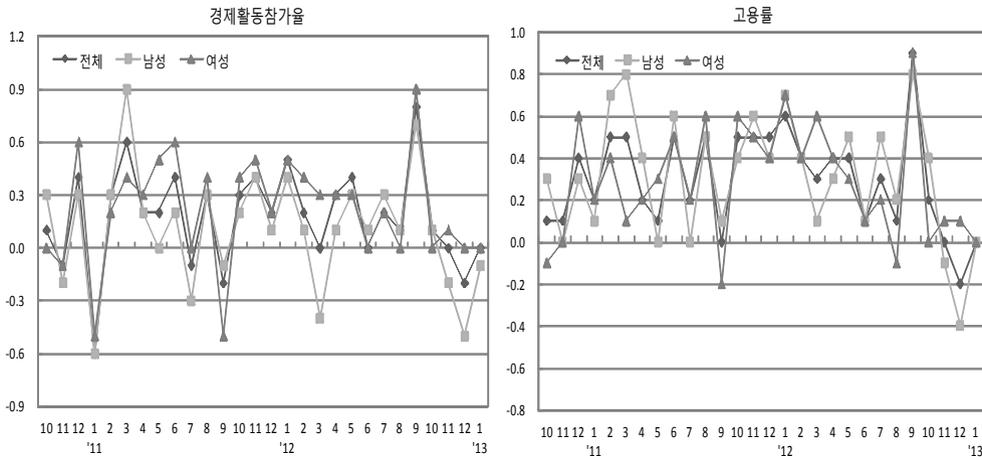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5,202 (1.6)	24,873 (1.6)	24,585 (2.0)	25,844 (1.6)	25,760 (1.9)	25,526 (1.3)	25,139 (1.0)	24,901 (1.3)		
참가율	61.1	60.1	59.5	62.3	61.8	61.1	60.1	59.5		
취업자	24,462 (2.0)	23,927 (2.0)	23,732 (2.3)	25,003 (1.8)	24,989 (2.1)	24,804 (1.4)	24,402 (1.1)	24,054 (1.4)		
고용률	59.4	57.8	57.4	60.2	60.0	59.4	58.3	57.4		
실업자	740	947	853	841	770	722	737	847		
실업률	2.9	3.8	3.5	3.3	3.0	2.8	2.9	3.4		
비경제활동인구	16,014 (0.3)	16,495 (0.6)	16,736 (0.0)	15,669 (0.7)	15,904 (0.4)	16,258 (1.5)	16,709 (1.9)	16,975 (1.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3. 2), 『2013년 1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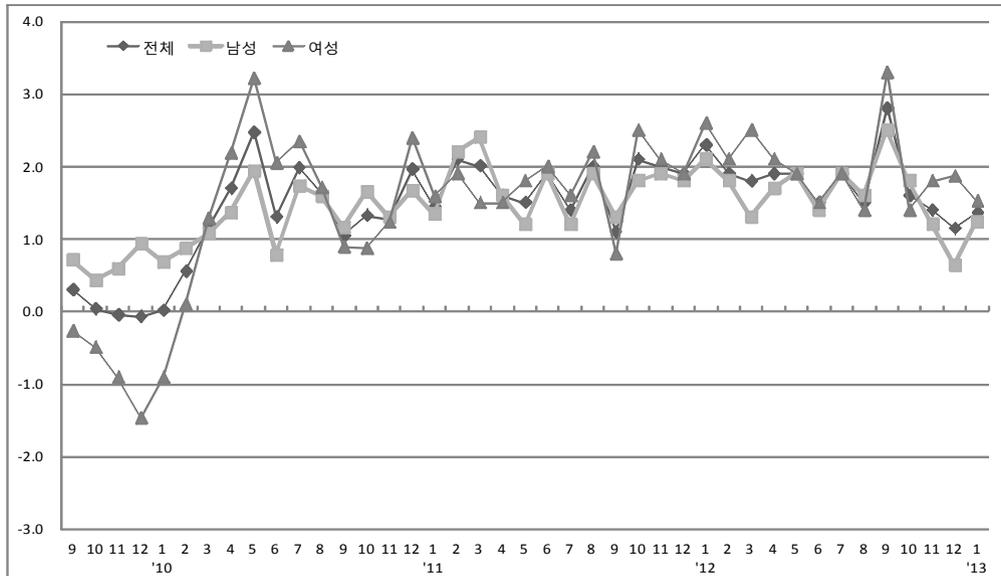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1.4%) 증가, 여성 실업자는 32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 명(-3.9%)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6%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으며, 여성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음.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3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9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9천 명(1.4%)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8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9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1,1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0천 명(1.5%)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8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4천 명(-9.1%) 감소한 반면,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68천 명으로 103천 명(2.5%) 증가함.

◆ 2012년 3분기 이후로 제조업 증가 지속

○ 2013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56천 명, 3.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1천 명, 2.9%)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5천 명, -1.4%), 건설업(48천 명, -2.8%),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천 명, -0.3%)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전 산업	24,462 (2.0)	23,927 (2.0)	23,732 (2.3)	25,003 (1.8)	24,989 (2.1)	24,804 (1.4)	24,402 (1.1)	24,054 (1.4)
농림어업	1,521 (-1.5)	1,176 (-2.6)	1,054 (3.5)	1,713 (-1.4)	1,706 (0.1)	1,518 (-0.2)	1,194 (-1.0)	1,040 (-1.4)
제조업	4,056 (-1.8)	4,037 (-2.5)	4,034 (-2.8)	4,061 (-1.6)	4,126 (2.1)	4,196 (3.5)	4,183 (2.8)	4,189 (3.9)
건설업	1,832 (4.0)	1,721 (4.8)	1,719 (5.3)	1,807 (1.9)	1,772 (1.0)	1,792 (-2.2)	1,750 (-4.5)	1,671 (-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42 (1.8)	5,571 (1.8)	5,615 (2.1)	5,596 (2.6)	5,610 (2.1)	5,603 (1.1)	5,597 (0.5)	5,610 (-0.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486 (3.1)	8,398 (3.7)	8,293 (3.6)	8,820 (3.4)	8,772 (3.5)	8,682 (2.3)	8,664 (3.0)	8,534 (2.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11 (5.5)	3,011 (4.5)	3,005 (4.6)	2,991 (2.0)	2,990 (-0.4)	2,998 (-0.4)	3,000 (-0.6)	2,996 (-0.3)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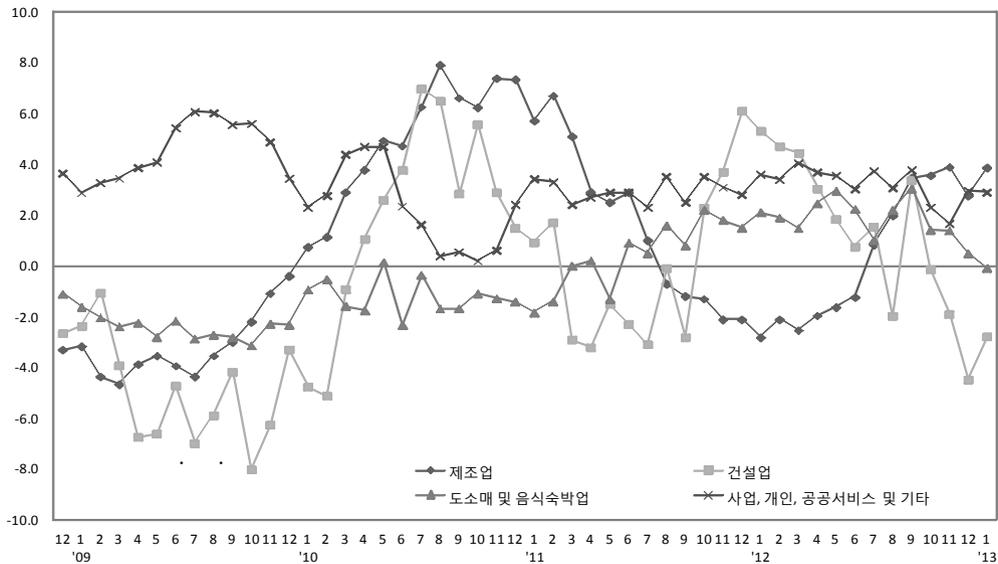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3. 2), 『2013년 1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 증가 및 자영업자 증가 지속

- 2013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47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5천 명(-1.1%)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5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7천 명(2.3%)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292천 명으로 523천 명(4.9%)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791천 명으로 77천 명(-1.6%), 일용근로자는 1,498천 명으로 49천 명(-3.1%)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7 좌측 참조).
 - 2011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7 우측 참조).
- 2013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3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0천 명(3.4%),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3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8천 명(1.5%)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140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4.6%)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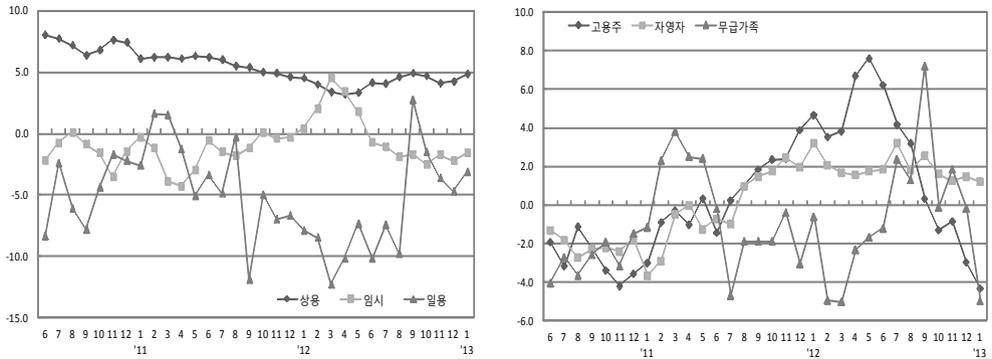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전 체	24,462 (2.0)	23,927 (2.0)	23,732 (2.3)	25,003 (1.8)	24,989 (2.1)	24,804 (1.4)	24,402 (2.8)	24,054 (1.4)
비임금근로자	6,878 (1.5)	6,650 (1.6)	6,548 (2.9)	7,154 (2.1)	7,154 (2.7)	6,917 (0.6)	6,639 (1.4)	6,473 (-1.1)
자영업주	5,639 (2.3)	5,548 (2.8)	5,473 (3.6)	5,830 (3.1)	5,823 (2.5)	5,672 (0.6)	5,532 (1.1)	5,452 (-0.4)
무급가족종사자	1,239 (-2.0)	1,102 (-3.6)	1,075 (-0.6)	1,324 (-1.7)	1,331 (3.6)	1,245 (0.5)	1,107 (3.0)	1,021 (-5.0)
임금근로자	17,585 (2.2)	17,277 (2.1)	17,184 (2.1)	17,849 (1.6)	17,835 (1.8)	17,887 (1.7)	17,763 (3.4)	17,581 (2.3)
상용근로자	10,820 (4.8)	10,825 (4.0)	10,769 (4.5)	11,059 (3.5)	11,216 (4.5)	11,288 (4.3)	11,282 (4.8)	11,292 (4.9)
임시근로자	5,042 (-0.2)	4,914 (2.3)	4,868 (0.4)	5,114 (1.4)	4,992 (-1.6)	4,933 (-2.2)	4,875 (0.1)	4,791 (-1.6)
일용근로자	1,723 (-6.3)	1,538 (-9.6)	1,547 (-7.9)	1,675 (-9.3)	1,627 (-5.2)	1,666 (-3.3)	1,606 (3.8)	1,498 (-3.1)
36시간 미만	3,217 (4.1)	3,313 (2.1)	3,261 (-0.4)	3,284 (2.3)	4,722 (-44.2)	3,219 (0.0)	3,326 (2.4)	3,371 (3.4)
36시간 이상	20,937 (1.5)	20,081 (1.7)	19,747 (2.5)	21,425 (1.7)	19,770 (28.2)	21,271 (1.6)	20,738 (0.8)	20,035 (1.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3. 2), 『2013년 1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대졸이상 실업자 증가

- 2013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 50대, 60세 이상 외의 연령대에서 감소함.
 - 2013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30대(3.3%, 0.5%p), 50대(2.2%, 0.2%p), 60세 이상(3.3%, 0.0p)에서 증가하였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3.3%, -0.2%p), 고졸(3.7%, -0.3%)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대졸 이상(3.2%, 0.3%p)에서 증가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012			12월	1월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 체	740(2.9)	947(3.8)	853(3.5)	841(3.3)	770(3.0)	722(2.8)	737(2.9)	847(3.4)
15~29세	292(7.1)	346(8.2)	339(8.0)	341(8.1)	283(6.8)	284(7.0)	304(7.5)	311(7.5)
30~39세	171(2.9)	190(3.2)	167(2.8)	188(3.2)	166(2.8)	162(2.7)	160(2.7)	193(3.3)
40~49세	131(1.9)	164(2.4)	156(2.3)	135(2.0)	133(2.0)	122(1.8)	117(1.7)	131(2.0)
50~59세	94(1.8)	124(2.3)	105(2.0)	112(2.0)	123(2.2)	102(1.8)	100(1.8)	119(2.2)
60세 이상	53(1.8)	124(4.4)	86(3.3)	66(2.0)	65(1.9)	52(1.6)	55(1.9)	93(3.3)
중졸 이하	108(2.1)	187(4.0)	160(3.5)	112(2.2)	106(2.1)	98(2.0)	107(2.3)	148(3.3)
고졸	349(3.5)	408(4.1)	406(4.0)	356(3.5)	350(3.4)	321(3.2)	344(3.4)	369(3.7)
대졸 이상	284(2.8)	352(3.4)	288(2.9)	373(3.5)	314(3.0)	303(2.9)	286(2.7)	331(3.2)
취업무경험 실업자	44	58	65	48	36	39	44	49
취업유경험 실업자	696	889	788	793	734	683	693	798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3. 2), 『2013년 1월 고용동향』.

- 2013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847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 감소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98천 명으로 10천 명 증가하였음.

(배기준,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2년 1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 2012년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3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618천 원) 4.4% 상승함.
 - 2012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한 2,900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해 2,471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181천 원을, 특별급여 증가율은 2.2% 상승하여 248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한 1,302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11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51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798천 원)대비 5.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11월 누계 대비 5.4% 상승한 3,128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1~11월 누계 대비 5.5%, 초과급여는 1.0%, 특별급여는 6.6%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11월 누계 대비 6.5% 상승한 1,284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1월 실질임금은 2.7% 상승함.

– 2012년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7% 상승을 기록함(그림 8 참조).

– 2012년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2% 상승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

(단위: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11월 누계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844 (1.0)	2,798 (1.2)	2,618 (1.6)	2,951 (5.5)	2,733 (4.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68 (-0.7)	2,776 (-0.4)	2,900 (4.5)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329 (4.7)	2,354 (5.3)	2,458 (5.5)	2,471 (5.0)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9 (-8.2)	179 (-12.2)	181 (1.0)	181 (1.4)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59 (-19.3)	243 (-30.3)	490 (6.6)	248 (2.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215 (15.1)	1,205 (13.9)	1,269 (22.6)	1,284 (6.5)	1,302 (2.6)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104.0 (4.0)	103.9 (4.0)	104.8 (4.2)	106.2 (2.3)	106.5 (1.6)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2.7	-2.5	3.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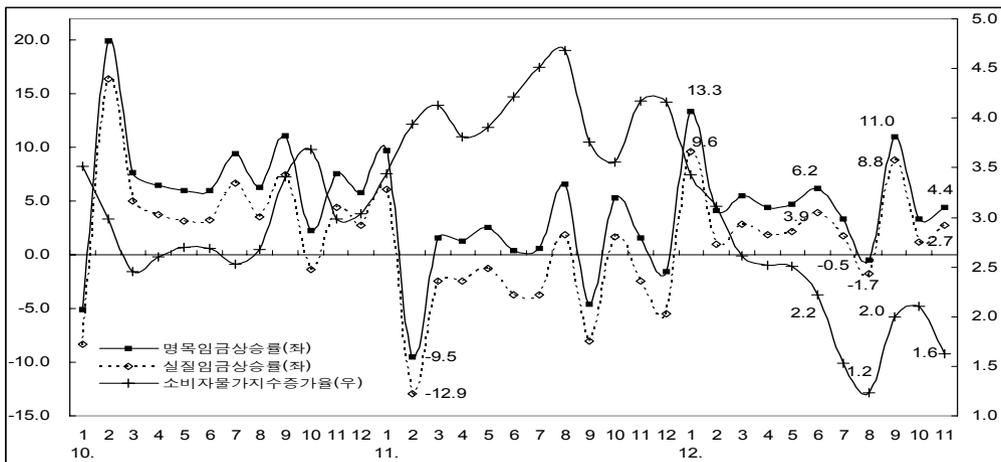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1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11월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2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운수업(9.1%), 도매 및 소매업(7.6%), 건설업(5.5%), 사업서비스업(5.5%)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2012년 1~11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11월 누계 기준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8.6%), 운수업(8.1%), 도매 및 소매업(6.8%), 제조업(6.3%)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11월 누계	11월	1~11월 누계	11월
전 산업	2,816 (6.8)	2,844 (1.0)	2,798 (1.2)	2,618 (1.6)	2,951 (5.5)	2,733 (4.4)
광업	3,000 (7.3)	3,309(10.3)	3,276(10.3)	3,224 (9.9)	3,491 (6.6)	3,434 (6.5)
제조업	2,985 (9.1)	3,034 (1.6)	2,969 (1.9)	2,675 (-0.8)	3,157 (6.3)	2,801 (4.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482 (0.5)	5,104 (0.1)	4,255 (3.6)	5,102 (0.0)	4,243 (-0.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488 (1.9)	2,449 (2.2)	2,434(10.0)	2,606 (6.4)	2,562 (5.2)
건설업	1,944 (7.9)	2,181(12.2)	2,171(13.2)	2,067(14.8)	2,257 (4.0)	2,181 (5.5)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942 (6.3)	2,868 (6.0)	2,678 (7.1)	3,064 (6.8)	2,881 (7.6)
운수업	2,381 (5.4)	2,393 (0.5)	2,368 (0.7)	2,292 (7.1)	2,559 (8.1)	2,502 (9.1)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653(13.0)	1,641(13.1)	1,624(13.9)	1,728 (5.3)	1,648 (1.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692 (9.1)	3,672(10.2)	3,776(15.6)	3,823 (4.1)	3,809 (0.9)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71 (1.9)	4,706 (2.0)	4,348 (3.1)	4,922 (4.6)	4,486 (3.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2,017 (2.6)	1,995 (2.9)	1,967 (8.4)	2,167 (8.6)	2,071 (5.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870(-2.2)	3,795(-1.6)	3,574(-1.2)	4,012 (5.7)	3,669 (2.6)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00(-8.0)	1,681(-7.7)	1,669(-3.2)	1,773 (5.5)	1,760 (5.5)
교육서비스업	3,157 (1.4)	2,985(-5.4)	2,984(-5.6)	2,770(-5.2)	3,125 (4.7)	2,874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490(-4.0)	2,458(-4.4)	2,476(-1.2)	2,590 (5.4)	2,535 (2.4)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130 (1.1)	2,070 (1.5)	1,978 (0.0)	2,161 (4.4)	2,054 (3.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185 (3.9)	2,170 (4.3)	2,076 (6.8)	2,206 (1.7)	2,106 (1.5)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1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11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11월 기준 2,67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5.1%), 초과급여(3.4%)와 특별급여(2.9%) 상승에 기인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11월 상용임금총액은 3,690천 원으로 2011년 11월 대비 4.1%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5.0%)와 특별급여(2.2%) 상승의 영향임.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는 1.5% 감소함.
- 2012년 1~11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6.0%)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3.7%)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3.7%)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11월 누계	11월	1~11월 누계	11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6.4)	3,019 (-0.9)	2,968 (-0.7)	2,776 (-0.4)	3,128 (5.4)	2,900 (4.5)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329 (4.7)	2,354 (5.3)	2,458 (5.5)	2,471 (5.0)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79 (-8.2)	179 (-12.2)	181 (1.0)	181 (1.4)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459 (-19.3)	243 (-30.3)	490 (6.6)	248 (2.2)
	비상용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1,205 (13.9)	1,269 (22.6)	1,284 (6.5)	1,302 (2.6)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5.5)	2,675 (-0.9)	2,638 (-0.5)	2,556 (2.3)	2,797 (6.0)	2,679 (4.8)
	정액급여	2,082 (4.3)	2,204 (5.9)	2,193 (5.8)	2,220 (6.8)	2,323 (5.9)	2,333 (5.1)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150 (-14.3)	150 (-17.1)	155 (3.3)	155 (3.4)
	특별급여	441 (8.4)	321 (-27.3)	295 (-26.9)	186 (-22.1)	319 (8.0)	192 (2.9)
	비상용임금총액	1,059 (-1.6)	1,216 (14.8)	1,204 (13.7)	1,272 (21.6)	1,292 (7.3)	1,317 (3.5)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9.1)	4,273 (-0.4)	4,175 (-0.5)	3,544 (-7.2)	4,329 (3.7)	3,690 (4.1)
	정액급여	2,779 (5.2)	2,842 (2.3)	2,826 (2.2)	2,821 (1.1)	2,945 (4.2)	2,962 (5.0)
	초과급여	268 (9.6)	286 (6.7)	286 (7.3)	282 (-2.1)	275 (-3.7)	277 (-1.5)
	특별급여	1,245 (18.7)	1,146 (-8.0)	1,062 (-8.5)	441 (-40.5)	1,109 (4.4)	451 (2.2)
	비상용임금총액	1,025 (-0.3)	1,208 (17.8)	1,210 (16.9)	1,242 (31.3)	1,199 (-1.0)	1,16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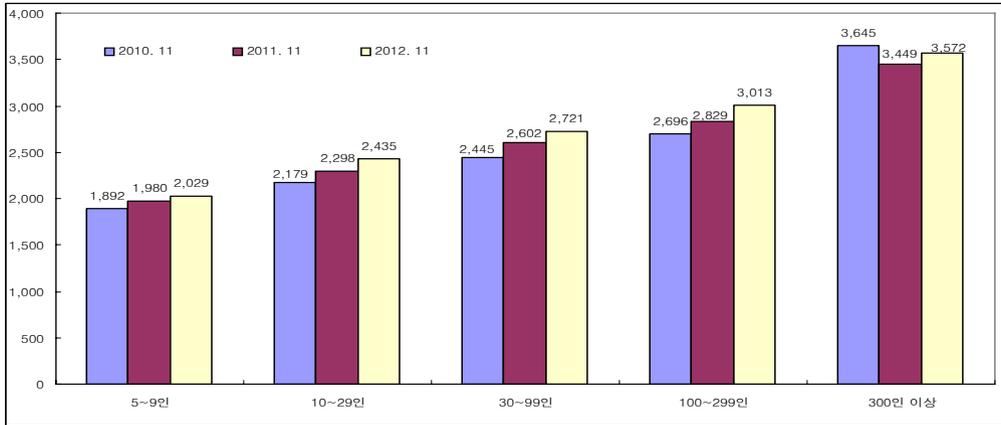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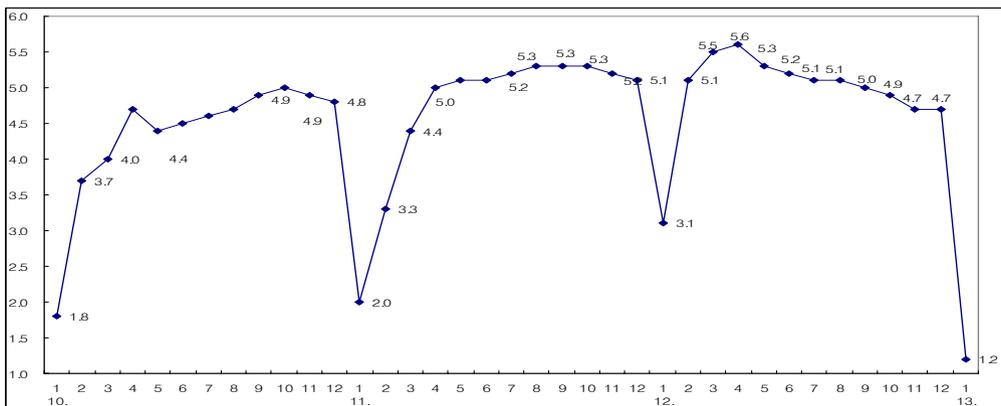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월 협약임금 인상률 1.2%

- 2013년 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1.2%로 2012년 1월 인상률(3.1%)에 비해 1.9%p 하락
 - 2012년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전년 인상률(5.1%)에 비해 0.4%p 하락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11월 근로시간 0.4% 감소

- 2012년 11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
 - 2012년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2.3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83.1시간)에 비해 0.8시간(0.4%) 감소함(표 9 참조).
- 2012년 1~11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2012년 1~11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5.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5.6시간)에 비해 0.5시간(-0.3%) 감소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2010	2011	2012			
			1~11월 누계		11월	
			1~11월 누계	11월	1~11월 누계	11월
전체근로시간	176.7(0.3)	176.3(-0.2)	175.6(-0.1)	183.1(-0.2)	175.1(-0.3)	182.3(-0.4)
상용총근로시간	184.7(0.2)	182.1(-1.4)	181.3(-1.3)	190.1(-1.6)	180.7(-0.3)	188.6(-0.8)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3(-0.6)	168.5(0.1)	167.7(0.3)	176.5(0.0)	168.0(0.2)	176.3(-0.1)
상용초과근로시간	16.4(8.6)	13.6(-17.1)	13.6(-17.1)	13.6(-18.6)	12.8(-5.9)	12.4(-8.8)
비상용근로시간	115.4(-3.3)	122.5(6.2)	122.1(5.8)	123.5(9.8)	122.0(-0.1)	128.2(3.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1월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11월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11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83.4시간, -1.8%), 운수업(186.0시간, -1.5%), 제조업(196.2시간, -1.0%)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건설업(162.4시간, 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63.8, 1.6%), 도매 및 소매업(184.2시간, 0.5%)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7.6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58.0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11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 산업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2010	2011	2012			
			1~11월 누계	11월		
전 산업	176.7(0.3)	176.3(-0.2)	175.6(-0.1)	183.1(-0.2)	175.1(-0.3)	182.3(-0.4)
광업	188.1(0.3)	186.9(-0.6)	186.0(-0.3)	191.0(-3.2)	186.1(0.1)	189.7(-0.7)
제조업	192.1(1.9)	190.6(-0.8)	190.0(-0.5)	198.1(-1.9)	187.1(-1.5)	196.2(-1.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0.1)	176.3(0.3)	186.8(2.4)	176.0(-0.2)	186.0(-0.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5.3(-3.3)	192.0(-1.7)	185.4(0.1)	191.7(-0.2)
건설업	146.1(-0.7)	153.9(5.3)	153.6(5.7)	155.0(7.0)	152.6(-0.7)	162.4(4.8)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4.3(-1.1)	183.3(0.6)	175.2(0.5)	184.2(0.5)
운수업	184.6(0.1)	181.6(-1.6)	180.8(-1.7)	188.9(0.9)	182.4(0.9)	186.0(-1.5)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5.4(13.7)	186.7(10.8)	187.1(0.9)	183.4(-1.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3.9(-0.6)	174.2(0.5)	165.0(0.7)	174.1(-0.1)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62.8(-0.7)	173.7(0.7)	164.6(1.1)	172.9(-0.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3.1(-3.2)	200.0(-1.9)	194.2(0.6)	197.6(-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5.3(0.1)	176.5(-0.2)	166.5(0.7)	176.0(-0.3)
사업서비스업	180.1(0.6)	172.1(-4.4)	171.0(-4.5)	183.1(-2.9)	174.0(1.8)	179.6(-1.9)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2.0)	152.3(2.1)	159.4(0.3)	152.4(0.1)	158.0(-0.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0.1)	173.5(-1.7)	172.6(-1.5)	182.7(-0.4)	175.5(1.7)	181.5(-0.7)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1.8)	157.1(-1.0)	156.6(-0.9)	161.2(-1.2)	158.4(1.1)	163.8(1.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3.1(-0.2)	177.9(-0.1)	169.4(-2.1)	172.0(-3.3)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11월 누계 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174.0시간, 1.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5.5, 1.7%), 운수업(182.4시간, 0.9%) 등임.
- 반면 제조업(187.1시간, -1.5%), 건설업(152.6시간, -0.7%)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11월 10~2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11월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2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7.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 100~299인 사업

체의 총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함(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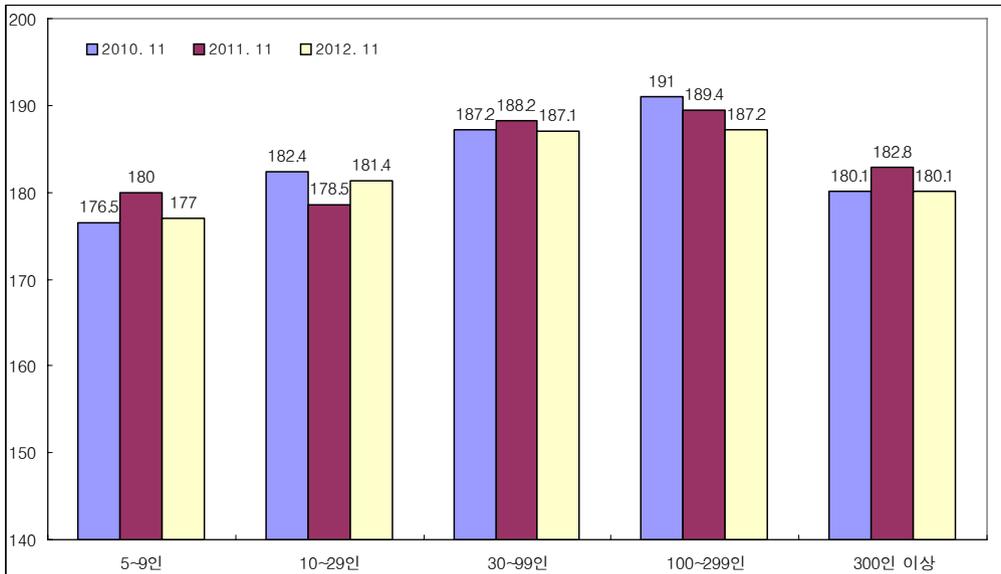
- 반면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1.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

○ 한편 2012년 1~11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 근로시간은 30~99인 규모를 제외한 전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2년 1~11월 누계 총 근로시간은 172.2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3%, 10~29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7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6%,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3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1%,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7% 감소함.
-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9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4% 증가함.

[그림 11]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2년 연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2년 연간 전국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근로소득(7.7%), 사업소득(1.6%), 이전소득(5.3%)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증가율은 3.8%로 나타남.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이전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4.3%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은 통신(6.6%), 의류·신발(5.9%), 주거·수도·광열(5.5%)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2.7% 증가하였고(실질로는 0.5% 증가), 교육지출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11				2012					
	4/4분기		연간		3/4분기		4/4분기		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883.4	7.3	3,841.6	5.8	4,141.9	6.3	4,092.6	5.4	4,076.9	6.1
경상소득	3,769.6	7.7	3,705.3	6.1	4,009.0	5.9	3,974.0	5.4	3,934.7	6.2
근로소득	2,533.3	7.7	2,495.6	6.3	2,775.4	7.8	2,719.5	7.3	2,688.8	7.7
사업소득	869	6.2	841.1	4.5	850	0.4	873.7	0.5	854.2	1.6
재산소득	15.4	0	16.3	12.3	20.5	38.1	22.3	44.8	20.9	28.8
이전소득	351.9	12.1	352.3	9	363.1	3.8	358.4	1.9	370.8	5.3
비경상소득	113.8	-6.5	136.3	-3	132.9	17.7	118.6	4.2	142.2	4.3
소비지출	2,379.60	3.1	2,392.7	4.6	2,467.1	1	2,412.3	1.4	2,457.4	2.7
비소비지출	703.3	7.5	722.3	7.2	791.8	6.1	731.9	4.1	759.5	5.1
처분가능소득	3,180.1	7.2	3,119.3	5.5	3,350.0	6.3	3,360.6	5.7	3,317.4	6.4
흑자액	800.5	21.7	726.6	8.3	882.9	24.8	948.3	18.5	860	18.4
흑자율	25.2	3.0p	23.3	0.6p	26.4	3.9p	28.2	3.0p	25.9	2.6p
평균소비성향	74.8	-3.0p	76.7	-0.6p	73.6	-3.9p	71.8	-3.0p	74.1	-2.6p

주 : 1)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2)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 통계청(2013. 2), 『2012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 비소비지출의 경우, 공적비소비지출 중 경상조세(9.7%), 연금(8.4%), 사회보험(7.7%)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조세(-1.5%)는 감소하였고, 사적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8.6%), 비영리단체로 이전(4.1%)은 증가하였으나 가구간이전지출(-0.7%)은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음.
- 2012년 연간 전국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1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음.
- 2012년 4/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였으며(실질 3.6% 증가), 경상소득은 5.4%, 비경상소득은 4.2%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의류·신발(5.2%), 주거·수도·광열(9.4%), 교통(7.8%) 등은 증가한 반면, 주류·담배(-2.7%), 교육(-1.4%), 기타상품·서비스(-10.5%)는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4% 증가에 그쳤으며, 실질로는 0.3% 감소하였음.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택시노사, 운행중단 돌입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2월 20일 운행중단에 돌입함.
 - 택시 4개 단체 소속 기사 2만여 명은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함.
 -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개인택시 연령제한 방안을 비롯해 택시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회가 약속한 대로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을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함.
 - 이에 국토해양부는 “불법 파업 참가자들은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택시 감차 및 사업면허취소 등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택시 15만 3,246대 중 4만 7,880대가 운행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지난 1일 영남과 호남지역 택시업계는 운행을 중단한 바 있음.

◆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 지속**

- 지난 1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본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2월 28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함.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9일 신세계 이마트 회사 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함.
- 이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2월 7일과 22일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노무컨설팅을 제공한 업체 등 1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함.
 -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여러 혐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들 지점은 이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이 사례별로 제기된 곳”이라고 설명함.
 - 이에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회사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함.

◆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를 둘러싼 논란**

- 지난 1월 27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용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 1월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20여 개의 시민·환경·노동단체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 규탄과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월 6일 삼성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함. 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이후 근로자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2월 4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함.

- 한편 고용노동부는 14일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3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 개정안에는 산업재해 판정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직업성 암 14종, 업무상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요인에 불화수소 등 35종,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추가되는 등 산재인정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인정기준이 없는 질병에 걸리면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산재유발요인을 확대하고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재계에서는 “직업성 암 인정범위를 늘릴 경우 노출 수준이나 기간, 잠복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 노동계는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을 50년 만에 확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동강도, 노동시간, 직무상 스트레스 등 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이번 개정과정에서 빠져 아쉽다”고 말함.

◆ **한진중공업 노사, 협상 타결**

-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2월 22일 영도조선소 내 농성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번 합의안에는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원 손해배상소송, △고 최모 씨의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데다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어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함.
 - 금속노조 관계자는 “합의 내용과 정신이 잘 이행된다면 노조와 회사 측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간 고 최모 씨의 유족과 금속노조 노조원 100여 명은 부산 영도조선소 안에 고 최모 씨의 주검을 안치하고 농성을 벌였음.
 -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살한 한진중공업 노조원 최모 씨의 죽음이 회사 측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있다”며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해야 장례절차와 유족 보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반면 회사 측은 이는 ‘불법점거’라며 “농성자들이 우선 조선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등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섬.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600명 정규직 채용**

- 현대자동차는 2월 7일 사내하청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고 밝힘.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0대 이상 지원자, 여성근로자 등 조합가입 여부,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내부인 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말함. 또한 올해 사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총 1,750명, 2016년까지 3,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이번 정규직 신규채용은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들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회사 측은 “노사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자연결원에 따른 충원도 3,500명 채용 정원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함.
 -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측은 “이번 정규직 채용은 회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1월 30일 파업을 단행함.
 - 1월 3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주간 7시간, 야간 6시간 파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비정규직 노조 측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함.
 - 이에 반해 회사 측은 신규 채용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2월 1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힘.
 -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와 불법파견 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비정규직지회가 회사 측과 독자교섭을 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함. 또한 “철탑농성 사수와 비정규직의 집회 지원은 계속 진행한다”고 덧붙임.
 - 현재 비정규직지회는 회사 측에 독자적으로 협상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하청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조는 법적인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한 상태임.

◆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복직 발령**

- 쌍용자동차는 2월 7일 무급휴직자 전원에 3월 1일자로 복직 발령을 내림.
 -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발령은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추진에 대한 일부 정치권 및 노동계 등 외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첫 번째 이행조치로 그 의미가 크다”며 “복직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복직절차는 향후 노사협약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함.
- 한편 법원은 15일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2009년 노사합의서상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시점은 생산물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그때로부터 1년 후”라며 “쌍용자동차의 계속된 복직 거부는 위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함. 또한 “쌍용자동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 원에 대한 청구를 인정한다”고 덧붙임.
 -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데 합의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체불 임금 청구소송 포기 협약서 제출을 제안한 바 있음.

◆ **한화그룹, 계약직 2,000여 명 정규직 전환**

- 한화그룹은 지난 1월 27일 상시적 지속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 2,000여 명을 3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 전환 대상은 호텔·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시설관리 인력, 고객상담사 등으로 한화호텔&리조트 725명, 한화손해보험 533명, 한화63시티 209명, 한화갤러리아 166명 등 총 2,043명임. 이 직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및 정년,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화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17%에서 10.4%로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그룹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종업원에게 고용안정을 통한 동기 부여와 소속감을 상승시키고 서비스 직군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여 고객에 대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한화그룹의 이러한 결정에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한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이번 조치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같은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함.
 - 한 노동 관련 전문가는 “그동안 공공부문이나 금융권에서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 고용안정에만 그치고 승진이나 급여차별 등은 여전했다”며 “고용 능력이나 급여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정규직화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른 대기업들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62세 정년 방안 추진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2월 17일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에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이 58세가 되면 정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기간 동안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급여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함. 구체적인 세부준칙은 노조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이는 올해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함.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들의 정년을 현재 58세에서 60세로, 임금피크제는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사업주가 공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과 공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공시해야할 대상이 되는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 근로자 등),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를 포함함.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해야 함.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법에 따른 공시를 한 것으로 봄.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으로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영여건상 비정규직 활용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기업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고용창출 여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함.
-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공시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행 대상을 대기업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민간 기업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KLI**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